

附 錄

- 瑞山郡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案 305面
- 瑞山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310面
- 瑞山郡一般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등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317面
- 瑞山郡公印條例改正條例案 331面
- 瑞山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37面
- 瑞山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39面
- 瑞山郡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... 345面
- 瑞山郡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346面
- 瑞山郡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47面
- 瑞山郡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48面
- 地方債(借入金)發行承認內譯 ... 348面
- 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內譯 349面
- 現地踏査內譯 356面

서산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직무"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
2. "일비"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.
3. "유족"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를 말한다.

제 3 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

- 2.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
- 3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
- 4.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

② 제1항 각호의 “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 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“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”에 준한다.

제 4 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 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
-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
- 3.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, 다만,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.

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.

제 5 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

한한다.

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“상해”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 6 조(보상금의 청구)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: 사망 당시의 유족
- 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,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

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산군의회회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을 경유하여 서산 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

제 7 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.

제 8 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.

제 9 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

① 직무로 인한 사망,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군에 서산군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의회의원중 1인
2. 군 본청 관련 실.과장 1인
3. 외무직 공무원 1인
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

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 10 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
2.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
3.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
4.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

제 11 조(심의회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군수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2 조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3 조(심의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심의회의 간사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서산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

제 15 조(심의회의 수당등)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접 수	계 호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			처 리 기 간
					즉 시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보상금 청구 내 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해				
사망, 장애,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					
심 의 회	<결 정> <결정이유>				
심 의 결 과	<심의위원 서명>				

서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
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서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

서 산 군 수 귀 하